

재심답변서

사 건 2014재누169 재심청구의 소

원고(재심원고) 임그루

피고(재심피고) 서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회장 황창규

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재심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심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이전 판결의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와 관련하여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0누6383호(제1 재심대상판결) 및 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0두8004호, 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호(제2 재심대상판결) 및 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4두6013호, 서울고등법원 2004재누122호(제3 재심대상판결) 및 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5두7624호, 서울고등법원 2006재누171호(제4 재심대상판결) 및 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7두17809호, 서울고등법원 2008재누236(제5 재심대상판결) 및 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9두5589호, 서울고등법원 2009재누189(제6 재심대상판결) 및 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9두22010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재누62호 및 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11두11372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재누229호 및 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12두12358호,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172 및 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13두2341호, 서울고등법원 2013재누148에서 모두 19번의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각 판결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행위는 정당한 인사조치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2. 재심사유의 부존재

피고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정당한 인사 조치임이 위 관련 판결로 밝혀졌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원고의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즉, 이전 관련 사건에서 판단누락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단 누락과 같은 재심사유는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 등에 대

하여 법원이 판단을 빠뜨리는 것으로서 판결 정본을 송달 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570 판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호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판결서의 이유에 원고의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의 표시가 누락되었다 주장하지만,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 누락이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7.10 선고2006재다218 판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의 재심청구는 그 이유가 전혀 없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위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회장 황 창 규 (인)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다) 귀중

